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역명 : 현풍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위치 : 남양주시 관내(현풍교, 내각대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점검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6. 까지

마. 기초금액 : 금35,48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도로시설관리과, ☎031-590-4367)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8. 12.(수) 09:00	2026. 8. 14.(금) 10:00	2026. 8. 14.(금) 11:00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 점검 교육(토목)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토목)]**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완료된 책임기술자(고급 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①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② 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및 ③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천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천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천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아.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031-590-4367\)](tel:031-590-4367), 공고 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58\)](tel:031-590-7358)로 문의 바랍니다.
-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
|---|--|
|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 |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 | |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

☐ 재해발생 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